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를 통한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한반도 구현을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여 정책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평화교류실을 신설하고, 분석기능 강화 및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전담 기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남북 사회문화·인도적 협력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고,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고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위해 본부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이하 35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서 본부로 18명을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며, 남북회담본부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며 본부에서 남북회담본부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권인도실, 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국”을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8호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을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추진
3.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총괄·조정
4.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대외 협의
5. 북한 핵문제 관련 대북·통일정책 수립 시행
6.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수립·시행
8.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9. 대북·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0.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
11.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12.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3.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14. 대북·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립 및 모니터링
15.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6. 대북·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7.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와의 협력 등 「공공외교법」에 따른 평화·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8.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10조의2의 제목 “(인권인도실)”을 “(평화교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권인도실”을 “평화교류실”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2.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대응
1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3.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4.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남북한 간 물품(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8.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관리·지원(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9.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20.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개발협력에 관한 정책·법령

· 제도의 수립 · 추진

21.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 · 개발협력 사업
의 추진 및 종합 · 지원

22.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 · 개발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 · 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
· 조정 · 승인

24.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 · 개발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
의 기획 · 조정 · 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평화협력지구와 관
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5.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 ·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
계 기관 · 단체와의 협조

제11조의 제목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0의2호”
로 한다.

10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 · 분석

제12조의 제목 “(통일협력국)”을 “(사회문화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협력국”을 “사회문화협력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
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3
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관리·지원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1.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총괄
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시행
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 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의 운영
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감독
26.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 6.25전쟁 남북 관련 전시 기획·개발,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28. 6.25전쟁 남북 관련 자료의 수집·기록·연구·보존 및 발간
29. 6.25전쟁 남북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관 홈페이지 관리
30.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3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를 포괄하는 평화협력지구 발전전략 수립·시행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19. 평화경제특구 법령 및 제도의 기획·운영
20.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21.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22.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3.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접촉, 연락 및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조정
2.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3.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4.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 포함)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 회계 · 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조달 · 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 조정(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 포함)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 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 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 · 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 · 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 · 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33.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3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5.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8.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39.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0.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1. 남북출입시설 체험·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단장)”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을 “회담본부에 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단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4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32조의6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7장의5의 제목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32조의10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26명을”을 “32명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6명을”을 “7명을”로 한다.

제35조 중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한다.

제36조 중 “통일부장관”을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실·국장급 3개 개방형”을 “개방형”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전단 중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통일기획관)”을 “(한반도정책경청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정책실장”을 “장관”으로, “통일기획관”을 “한반도정책경청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기획관”을 “한반도정책경청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일기획관”을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반도정책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종합·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수립·종합·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획 총괄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에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통일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 중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국립평화통일자료원”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3”을 “327”로, 일반직 계 “268”을 “322”로, 고위공무원

단 “10”을 “11”로, 3급 또는 4급 이하 “249”를 “30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7”을 각각 “178”로, 고위공무원단 “3”을 “4”로, 3급 또는 4급 이하 “163”을 “173”으로 한다.

별표 3에 제1호 조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1) 조직란 1)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2호 조직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2) 조직란 2)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화교류실
2. 평화교류실 1개 정책관등

3. 평화교류실 4개 과	17명
---------------	-----

별표 3에 제4호 조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3) 조직란 3)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문화협력국 2개 과

5. 평화협력지구추진단	1명
6. 평화협력지구추진단 2개 과	15명

별표 4 중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통일기획관”을 “한반도정책경청단”으로, 총계 및 일반직 계 “1”을 각각 “8”로 하며,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를 삭제하고, “총계 7”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7”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제39조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정책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정책경청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

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 일부장관 소속 하에 <u>남북관계관 리단</u>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 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u>남북회담본</u> <u>부</u> ----- ----- --.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 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으로 <u>국립통일교육원</u> 을 둔다.	② ----- ----- ----- ----- ----- ---- <u>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u> - -----.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 영지원과, 통일정책실, <u>인권인 도실</u> , 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 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평화교류</u> <u>실</u> ,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 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8. (생략) <u>8의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회의 운영</u> 9. ~ 24. (생략)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u>수립·종합·조정</u> 2. 당면한 <u>대북정책</u>의 수립·추진 3. 통일·대북정책의 <u>분석·평가</u> 4. 통일·대북정책 관련 <u>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u> <신설> <신설> 5. <u>통일정책</u>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총괄·조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9. ~ 24.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일정책실) ① ----- -----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u>실장 및 정책관등 1명</u>----- -----. ③ ----- --. 1. ----- <u>종합·조정</u> 2. ----- <u>대북·통일정책</u>----- -- <삭제> 4.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내 <u>대북정책의 수립·추진·대외 협의</u> 5. 북한 핵문제 관련 <u>대북·통일정책 수립 시행</u> 6. <u>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u> 3. <u>대북·통일정책</u> ----- --
---	--

정

6. 통일·대북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7. 통일·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9.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
내외 공감대 형성

1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 법령·제도의 수립·시행

<신 설>

11. (생 략)

12.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
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
과의 협조

<신 설>

13. (생 략)

1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신 설>

14. 대북·통일정책 -----

--

9. 대북·통일정책 -----

--

<삭 제>

<삭 제>

10.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
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

11.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8.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
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3.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관리

7. (현행 제13호와 같음)

<삭 제>

15.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
립 및 추진

16. 대북·통일정책 관련 관계

<신 설>

16.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시행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국가와의 협력

17.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와의 협력 등 「공공외교법」에 따른 평화·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8.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

제10조의2(평화교류실) ① 평화교류실----- 1명-----.

② ----- 1명----- .

③ -----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2.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u>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u> <u>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u> <u>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u> <u>9.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u> <u>10.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u> <u>11. 이산가족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u> <u>12. 이산가족 관련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u> <u>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u> <u>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u> <u>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u>	<u>지원</u> <u>6.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u> <u>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u>8.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u> <u>9.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대응</u> <u>1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u> <u>11.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u> <u>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u> <u>13.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u> <u>14.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u> <u>15.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u>
---	---

<u>16.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에 관한 정책·법령·제 도의 수립·추진</u>	<u>1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 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 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평화 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 외한다)</u>
<u>1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 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u>	<u>17. 남북한 간 물품(남북사회문 화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지구 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 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u>
<u>18. 남북한이 합의한 대북 인도 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u>	<u>18.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 정·관리·지원(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u>
<u>1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 관련 합의의 이행에 관 한 사항</u>	<u>19.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 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 조, 지원 및 관리</u>
<u>2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u>	<u>20.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 경협력·개발협력에 관한 정 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u>
<u>2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 촉 신고의 수리</u>	<u>21.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 지원 및 기후환경협력·개발 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 지원</u>
<u>2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u>22.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u>

<u>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u>	<u>경협력·개발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u>
<u>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획·조정 및 협력·지원</u>	<u>23.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정·승인</u>
<u>2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u>	<u>24.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개발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평화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u>
<u>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u>	<u>25.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개발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u>
<u>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u>	<u><삭 제></u>
<u>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u>	<u><삭 제></u>
<u>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u>	<u><삭 제></u>

리계획의 수립·시행

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

소의 지도·감독

제11조(정보분석국) ① 정보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삭제>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분석

11. ----- 제10의2호-----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

	<u>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u>
<u>2. 국내외 통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u>	<u>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중 합·지원</u>
<u>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 업체계 구축 및 지원</u>	<u>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u>
<u>4.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 발·보급</u>	<u>4.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조 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 의 수리</u>
<u>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 의 협력</u>	<u>5.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 한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u>
<u>6.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 텐츠의 기획·개발·보급</u>	<u>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 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조정·관리·지원</u>
<u>7.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 동포와의 협력 등 「공공외교 법」에 따른 통일 관련 공공 외교에 관한 사항</u>	<u>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 련된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u>
<u>8.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 립·시행</u>	<u>8.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u>
<u>9.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u>	<u>9.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u>

<u>10.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u> <u>1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 획 · 개발 · 보급</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회답 지원</u> <u>10.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 로 관련 법령 · 제도의 입안 · 협의 및 실태조사 · 연구</u> <u>11. 이산가족 관련 접촉 · 왕래 의 기획 · 조정 및 승인</u> <u>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 관 리 및 운영 지원</u> <u>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 상봉 · 서신교환 · 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u> <u>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 ·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u> <u>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 한 정책 수립 · 총괄</u> <u>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입안 · 시행</u> <u>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 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u> <u>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 · 감독</u> <u>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 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u>
--	---

<u><신 설></u>	<u>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u>
<u><신 설></u>	<u>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u>
<u><신 설></u>	<u>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u>
	<u>수립 및 종합·조정</u>
<u><신 설></u>	<u>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u>
	<u>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u>
	<u>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u>
	<u>·연구</u>
<u><신 설></u>	<u>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u>
	<u>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u>
	<u>대책기구의 운영</u>
<u><신 설></u>	<u>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u>
	<u>리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u>
	<u>소의 지도·감독</u>
<u><신 설></u>	<u>26.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 및</u>
	<u>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7. 6.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u>
	<u>획·개발, 유물의 구입, 수집,</u>
	<u>보존 및 관리</u>
<u><신 설></u>	<u>28. 6.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u>
	<u>수집·기록·연구·보존 및</u>
	<u>발간</u>
<u><신 설></u>	<u>29.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프</u>
	<u>로그램 운영 및 기념관 홈페이지 관리</u>

<신 설>

<신 설>

<신 설>

30.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3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2조의3(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개성공단 남북공
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한
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
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
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
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
구”라 한다)를 포괄하는 평화
협력지구 발전전략 수립·시
행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

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

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약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

· 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

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

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

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

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19. 평화경제특구 법령 및 제도의 기획·운영
20.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21.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22.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 계획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대화·교류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23.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접촉, 연락 및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조정
2.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3.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4.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u>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u> <u>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u> <u>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9. 판문점 등 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운영 및 출입·보안·통제에 관한 사항</u> <u>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u> <u>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u> <u>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u>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u> <u>14. 남북교류 통계·동향의 종합·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u>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u> <u>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u>	<u>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u> <u>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u> <u>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u> <u>12. 남북회담·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 포함)</u> <u>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u> <u>14.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u> <u>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u> <u>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u> <u>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u> <u>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u> <u>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u>
--	--

<u>각종 승인, 조정 및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u> 17. <u>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u>의 개발·관리·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8. <u>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u> 19. <u>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 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u> 20. <u>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u>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u>연락 및 협의 포함)</u> 20. <u>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u> 21. <u>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u> 22. <u>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u> 23. <u>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u> 24. <u>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u> 25. <u>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u> 26. <u>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u> 27. <u>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u> 28. <u>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운영</u> 29. <u>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u> 30. <u>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u> 31. <u>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u>
---	--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
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
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
수
33.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
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
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3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5.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
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
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
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8.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39.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0.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
사지원에 관한 사항
41. 남북출입시설 체험·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단장) ① 남북관계관리단
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
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
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
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
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제15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본
부장 -----.

② 본부장-----
-----.

③ 본부장-----

-----.

제16조(하부조직) ① -----

-- 남북회담본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
원-----
-----.

②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담기획부장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
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③ (생
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
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
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
다.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
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
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
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제32조의10(직무) 국립통일교육원
(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국립평화통
일민주교육원-----

--.

제32조의6(하부조직)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
주교육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32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관리단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업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

② -----

-----.

----- 7명을-----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
----- 남북회담본부 -----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
급 3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정보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
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3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
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
표 3과 같다.

② (생략)

제38조(통일기획관) ① 통일정책

---.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 개방형 --

-----.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세분석국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평가대상 조직) ① -----

----- 통일
부와 그 소속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한반도정책경청단) ① 장

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기획관을 둔다.

② 통일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기획관은 제10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관 -----

-- 한반도정책경청단-----
-----.

② 한반도정책경청단장-----

---.

③ 한반도정책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종합·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수립·종합·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 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④ 통일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과)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과를 둔다.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과장 1명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획 총괄

④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에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통일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정책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과제 연구·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관계 부처, 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연구

④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

<u>로 정한다.</u> 제39조(한시정원) <u>통일정보자료센터</u>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제39조(한시정원) <u>국립평화통일자료원</u>----- ----- ----- <u>2026년 12월 31일</u>-----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73</u>		<u>327</u>	+54	
	.		.		.		
	.		.		.		
일반직 계			<u>268</u>		<u>322</u>	+54	
고위공무원단			<u>10</u>		<u>11</u>	+1	
3급 또는 4급 이하			<u>249</u>		<u>302</u>	+53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67</u>	<u>178</u>	+11
일반직 계	<u>167</u>	<u>178</u>	+11
고위공무원단	<u>3</u>	<u>4</u>	+1
3급 또는 4급 이하	<u>163</u>	<u>173</u>	+10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한반도정책경청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1. 통일기 획관(존속 기한: 202 6년 12월 31일)</u>	<u>1. 한반도 정책경청 단(존속 기한: 202 6년 12월 31일)</u>	
총계	<u>1</u>	<u>8</u>	+7
일반직 계	<u>1</u>	<u>8</u>	+7
•	•	•	
2. <u>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u>	<u>2. 통일미 래추진과 (존속기 한: 2026 년 12월 3 1일)</u>	<u><삭 제></u>	-2. 통일 미래추진 과(존속 기한: 20 26년 12 월 31일)
총계	<u>7</u>	<u><삭 제></u>	-7
일반직 계	<u>7</u>	<u><삭 제></u>	-7
•	•	•	

[별표 5]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제39조	.		.	.	
			<u>관련 한시</u>	<u>관련 한</u>	
			<u>정원(존속</u>	<u>시정원</u>	
			<u>기한: 202</u>	<u>(존속기</u>	
			<u>5년 12월</u>	<u>한: 2026</u>	
			<u>31일)</u>	<u>년 12월 3</u>	
				<u>1일)</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